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Human Rights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주(註)

동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2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를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
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안 217 A(II)에 의해 채택됨.



Contents_

배경	9
–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정	10
– 국제규약의 채택과정	11
세계인권선언	13
–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과 영향	16
국제인권규약	18
조건	21
제1선택의정서	23
제2선택의정서	25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발효	26
국제인권장전이 전 세계에 끼친영향	30
부록: 국제인권장전	35
– 세계인권선언	35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0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0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67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	70

|배경|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이 국제규약의 2개 선택의정서로 구성된다.¹⁾

인권은 국제연맹 규약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히 세계노동기구(ILO)가 창설되었다. 유엔현장을 기초하기 위해 1945년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당시로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심의되지 못했다. 유엔현장은 “인종, 성별, 인어, 또는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중진하고 장려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조 3항). 많은 사람들은 “국제인권장전”의 정신이 유엔현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폐회되는 즉시 소집된 유엔준비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1차 회기에서 유엔현장 68조가 구상하는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초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1) 원문은 동 인권해설집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유엔총회는 1946년 1차 회기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심의하고, 이를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의안 43 (I)) 경제사회이사회로 전달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7년 초 1차 회기에서 “국제인권장전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위임했다. 그 후,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선정한 8개국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기초위원회가 이 작업을 인수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과정

처음에는 국제인권헌장의 형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결국 기초위원회는 2개의 문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선언의 형식으로 인권에 대한 일반원칙 또는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약의 형식으로 권리들과 권리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초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의 조문들의 초안을 유엔인권위원회로 이송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7년 12월 2차 회기에서 준비 중에 있던 일단의 문서들에 “국제인권장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3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3개 실무그룹 중 하나는 세계인권선언을, 다른 하나는 국제인권협약 (후일 “규약”으로 개칭)을, 나머지 하나는 이행문제를 각각 책임지도록 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5~6월 3차회기 때 각국 정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언문 초안을 수정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비로소 파리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결의안 217 A (III)을 통해 계획 중에 있던 인권 규약들 중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국제규약의 채택 과정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바로 그 날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 규약 초안과 이행구칙 초안을 최우선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9년 초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해인 1950년 각국 정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초 18개 조문들을 수정했다. 1950년 유엔총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의 향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향유는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이 있고,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 (결의안 421 (V), E절)이라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유엔헌장에서 명시한대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951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각국 정부들과 전문가구들의 제안들을 토대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11개 조문을 기초했다. 또한 유엔총회는 그러한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담은 10개 조문을 작성했으며, 규약의 회원국들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유엔총회는 1951년과 1952년에 개최된 6차 회기에서 오랜 논쟁 끝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에 관한 2개 규약을 기초할 것을... 2개 규약 중 하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으로,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될 것”을 요청했다(결의안 513 (VI), 1항). 유엔총회는 이러한 2개 규약들에 유사한 조항들을 가능한 한 많이 담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자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조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결의안 515 (VI)).

유엔인권위원회는 1953년과 1954년의 9차회기 및 10차 회기에서 2개 규약의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유엔총회는 1954년 9차 회기에서 이 초안들을 심의했으며, 각국 정부들이 이 초안들을 철저히 연구하도록 하고, 자

유롭게 표출되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초안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1955년 10차 회기에서 제3위원회(Third Committee)에게 이 문서를 각 조항별로 철저하게 토의하도록 권고했다. 조항별 토의는 일정대로 시작되었으나, 1966년이 되어서야 두 규약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안 2200 A (XXI)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에 의해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는 규약에서 명시한 권리들 중 특정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의 진정을 처리할 국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규정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천명하였다.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기 위하여 표결한 결과, 18개 회원국들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반대는 없었고, 8개국은 기권했다. 총회의 의장은 투표가 끝난 뒤 발표된 성명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대단한 성과이며, 위대한 변화 과정의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유엔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선언문을 최초로 공포한 사건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전체의 신념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을 포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도움과 지도를 청하고,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서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모든 남녀가 어

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을 천명한다.

1조는 세계인권선언의 근본이 되는 철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자유의 권리와 평등의 권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는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기에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며, 따라서 다른 생명체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대전제를 정의한다.

2조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있어서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

3조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번째 초석으로, 모든 다른 권리의 향유에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인 생명과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천명한다. 이 조문은 다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는 1조부터 21조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즉, 노예상태 및 예속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어느 곳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효과적인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 의해 공정한 재판과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의 자의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자유

로운 이동과 주거의 권리, 방명의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혼인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 재산을 가질 권리,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권리, 자유로운 의견과 표현의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및 평등하게 공무를 맡을 권리 등의 기초가 되는 조문이다.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두 번째 초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는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규정된 23조부터 27조까지를 소개한다. 22조는 이러한 권리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의 개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규정하고, 이 권리들은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권리들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각국이 보유하는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22조부터 27조까지의 조항들에서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건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결론적 조문들인 28조부터 30조까지의 조항들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 선언에서 명시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지는 책임과 의무들을 강조한다. 29조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사회의 윤리, 공공질서 및 사회일반의 복지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들에 반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밝

하고 있다. 30조는 어떠한 국가, 단체, 또는 개인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여하한 권리와 자유를 밟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하한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하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 기구들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장전의 다른 부분들도 인용하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과 영향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가들의 인권보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만국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기준의 존중과 준수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1918년 이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모든 선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선언인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촉진하는 영감의 근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며,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규약들에게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다.

1968년 이란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테헤란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인류 공통의 견해를 선언하며, 지구촌 모든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천명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세계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원칙들에 대한 신념을 확인했으며,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정부들에게 “이 원칙들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품위 있는 삶,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제인권규약

인권에 관한 2개 국제규약의 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 거의 동일하다. 이 서문들은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며, 개인들이 그러한 인권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규약의 1조는 자결권은 만국공통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국가는 자결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조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규약의 3조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에게 이 원칙을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5조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중 일부의 말살 또는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며, 규약의 어떠한 조항도 규약

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인권과 자유의 침해 또는 제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한다. 또, 5조는 이 규약들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미 향유 되고 있는 권리들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6조부터 15조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근로의 권리 (6조), 정당하고 쾌적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권리 (9조), 가족들, 특히 어머니, 아동과 유아들을 위한 최대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0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11조), 성취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12조), 교육을 받을 권리 (13조, 14조),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 (15조)를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의 6조부터 27조까지는 생명권 (6조)을 선언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으며 (7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으며,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되고,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있거나 강제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8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 (10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11조)고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12조)를 보장하는 반면에 합법적으로 회원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추방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13조)고 규정한다. 또, 모든 사람이 법원과 특별 법원(tribunal)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형사 및 민사 소송 절

차상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을 받는다(14조)고 규정한다. 또 이 규약은 형법의 소급적 적용을 금지하고(15조),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명시하고)(16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을 금지한다(17조).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19조)를 규정한다. 또한 전쟁 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중오심을 부추겨 차별, 적대심, 또는 폭력사태를 선동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시킨 것을 규정한다(20조). 이 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21조)와 결사의 자유(22조), 혼인이 가능한 연령에 따른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혼인 중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들이 혼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원칙(23조)을 확인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24조), 모든 국민이 공무에 참여할 권리, 투표할 권리, 선거에 의해 선출될 권리, 보편적인 평등권에 입각하여 자국의 공직을 맡을 권리(25조)를 규정한다. 그 밖에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6조)라고 규정하고, 회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7조).

마지막으로 28조는 본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이행을 감시할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한다.

| 조건 |

세계인권선언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민주사회의 윤리, 공공질서 및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인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어떠한 권리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들에 반하여, 또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29조, 3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권리들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해당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고, 민주사회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선언한다(1조).

국제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는 달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규약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들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제한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단, 이 규약의 몇 개 조항들은 해당 조항이 인급하는 권리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나,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권리들은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로는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채무를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소급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권리 등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일부 권리들의 행사를 제한 또는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 또는 정지는 “상황의 긴박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요구되는 정도”까지만 허용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출신배경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1조). 이러한 제한 또는 정지는 반드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 제1선택의정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는 이 국제규약에 의해 설립된 자유권구약위원회에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본 국제규약의 회원국 중 본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은 선택의정서 1조에 의거해서,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자가 규약에서 정한 권리들 중 여하한 권리를 자신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자유권구약위원회가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 가능한 국내의 구제 수단들을 모두 시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자유권구약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권리가 있다(2조).

자유권구약위원회는 심리적격한 것으로 판단된 통보서(2조뿐만 아니라 3조와 5조 (2)도 인정가능성의 조건들을 규정한다)에 대해서는 규약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회원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을 해명하고,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해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조).

자유권구약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심리적격한 통보서를 관련 당사자와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서면 정보들을 기초로 심사한 다음, 당사국

과 당사자에게 자유권구약위원회의 견해를 전달한다(5조).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자유권구약위원회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인권위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킨다(6조).

|제2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며, 1989년 12월 15일자 총회 결의안 41/128을 통해 총회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의정서의 1조는 의정서 가입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사형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의정서 3조는 가입국들은 자유권구약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선택의정서 5조는 제1선택의정서의 모든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당사국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자의 인권침해 통보를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는 자유권구약위원회의 권한이 제2선택의정서의 조항들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단, 당사국이 승인 또는 가입 시 그렇지 않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는 제2선택의정서의 조항들은 본 규약의 추가적 조항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발효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27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신청서가 기탁된 지 3개월 만인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1995년 9월 30일 현재, 다음과 같은 132개국이 이 규약에 가입했다.²⁾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양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북한,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칸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쿠아토리얼 기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잠비아, 조지아,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기아나, 아이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2) 200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추가된 가입국은 방글라데시, 벨리즈, 중국, 지부티, 에리트리아, 가나, 쿠웨이트, 리오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총 가입국수는 150개국수임. [감수자 주]

케냐,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폐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셸레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안 아랍 공화국,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통고,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 튜니지, 우크라이나, 영국,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짐바브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41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신청서가 기탁된 지 3개월 만인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1995년 9월 30일 현재, 다음과 같은 132개국이 이 규약에 가입했다.³⁾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양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북한,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칸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쿠아토리얼 기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잠비아, 조지아, 독일,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기아나, 아이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3) 200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추가된 가입국은 방글라데시,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지부티, 에리트리아, 가나, 그리스, 온두라스,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시에라리온, 나이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총 가입국수는 153개국수임. [감수자 주]

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셸레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마케도니아, 통고,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 튜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짐바브웨

같은 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41개 회원국들은, 규약 41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이 본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41조의 조항들은 41조 2절에 의거하여 1979년 3월 28일 발효되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는 발효에 필요한 최소 회원국 수인 10개국이 승인 또는 가입을 함에 따라 규약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1995년 9월 30일 현재, 다음과 같은 85개 본 규약 회원국들이 제1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해 있다.⁴⁾

4) 200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추가된 가입국은 아제르바이잔,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콜로아이타야, 지부티, 그리스, 과테말라, 레소토, 리히텐스타인, 말리, 멕시코,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총 가입국수는 104 개국임. [감수자 주]

알제리, 양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칸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쿠아토리얼 기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잠비아, 그루지야, 독일, 기니,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타, 모리셔스, 몽골,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셸레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통고,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자이레, 잠비아, 짐바브웨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발효에 필요한 최소 회원국 수인 10개국이 승인 또는 가입함에 따라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다. 1995년 9월 30일 현재, 다음과 같은 28개국이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있다.⁵⁾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이셸레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마케도니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 200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추가된 가입국은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콜로아이타야, 코로아이타야, 사이프러스, 지부티, 그루지야, 그리스, 리히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네팔, 슬로바키아, 나이프리카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영국으로 총 가입국수는 51개국이다. [감수자 주]

| 국제인권장전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 |

191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선언된 이후부터 1976년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이 발효될 때까지, 세계인권선언이 유일하게 국제인권장전의 실질적 내용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리고 후일 발효한 국제규약들은, 전 세계 모든 개인들과 정부들의 사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20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196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테헤란에서 열린 테헤란 세계인권회의는 테헤란 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1.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세계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입장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식민국과 그들의 국민에 대한 독립 허용에 관한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유엔과 전문기구들 및 지역별

기구들의 후원하에 채택된 기타 인권관련 협약과 선언들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과 의무들을 규정한다.

이와 같이, 25년 이상의 세월동안 세계인권선언은 유일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국가들의 국제인권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세계인권선언은, 두 가지 국제규약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가입한 국가들에서,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은 유엔기구들이 내린 수많은 중대한 결정들의 근거와 정당성의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이 조항들은 유엔제도 내외의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의 설립을 촉진시켰으며, 수많은 다국간 조약 및 양국간 조약들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수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헌법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천명하는 역사적 문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구촌 모든 곳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존중과 준수의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회원국들의 법적, 윤리적 의무를 인정한 국제규약들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세계인권선언의 광범위한 영향력이 감소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국제규약들의 존재 사실 자체와, 동 규약들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권리와 자유들의 실현을 위한 이행 기준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인권선언은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느냐 또는 국제규약들을 승인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들에게 유효하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서이다. 반면, 국제규약들은 다국간 협약이라는 속성 때문에,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자신을 인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

는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유엔 기구들이 채택한 수많은 결의안과 결정들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과 2개 국제규약 중 하나의 규약이나 2개 규약 모두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1948년 아래 유엔 기구들에 의하여 채택된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제도들이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을 인용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선언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서문도 이와 비슷한 선언을 하고 있다.

197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모든 인간의 보호에 관한 선언(결의안 3152 (XXX))은 모든 사람이 고문과 그 밖의 잔虐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 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후, 1984년 고문과 그 밖의 잔虐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안 39/16)이 채택됨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금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 1981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36/55)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법 앞의 불차별 및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유엔제도의 외부에서 체결된 국제인권구약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를 들면, 1950년 로마에서 열린 유럽회의에 의해 채택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사한 생각과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라는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의 정부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권리들을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1963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된 아프리카통일기구 현장 2조는 기구의 목적 중 하나가 “유엔 현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조인된 미주인권협약은 서문에서 동 협약이 미주국가기구 현장, 인간의 권리와의 무에 관한 미주선언,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은 판결의 근거로서 국제인권장전의 원칙들을 때때로 인용해 왔다.

국가 또는 지방 법정들도 국제인권장전의 원칙들을 판결의 근거로서 종종 인용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헌법과 법률에 이러한 원칙들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법과 지방정부 조례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들의 조항들을 모델로 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구약들이 국가적 및 국제적,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인권보호 노력의 지침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회의는 인

권기구 및 제도들의 체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환영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인권 조약들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에게 가능한 한 조항에 대한 유보선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편 26장).

따라서 국제인권장전은 인권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며, 인류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진정한 마그나 카르타이다.

|부록| 국제인권장전^{⑥)}

세계인권선언^{⑦)}

서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악마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 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 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 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

⑥) 번역: 정인섭

⑦) 1948년 12월 10일 총회 결의안 217 A (II)에 의하여 채택.

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중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제 1조 보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 2조 보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보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 3조 보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보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조 보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 제 7조 보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8조 보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 10조 보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1조
 -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보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보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3조
 - 1. 보든 사람은 가족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저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다.
 - 2. 보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리로부터도 출국한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제 14조
 - 1. 보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항유한 권리가 있다.
 -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 15조
 - 1. 보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p>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p> <p>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p> <p>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p>
제17조	<p>보는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p> <p>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p>	제24조
제18조	보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보는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보는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접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 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5조
제20조	<p>1. 보는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시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p> <p>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시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p>	<p>1. 보는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2. 보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는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p>
제21조	<p>1. 보는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2. 보는 사람은 자국의 공부에 취업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p> <p>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리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p>	제26조
제22조	보는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p>1. 보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부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보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p> <p>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보는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p> <p>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p>
제23조	1. 보는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	제27조

- 제28조 보는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1.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신,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한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와 같은 행위를 행한 어떠한 권리도 가사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⁸⁾

서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현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되기를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⁸⁾ 1966년 12월 16일 총회 결의안 2200 A (XXI)에 의하여 채택.

촉진시킨 국제연합 현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부

- 제 1조 1. 보는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보는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정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부

- 제 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보는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진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사용자들이 혜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한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연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한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보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 것을 약속한다.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제 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 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 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려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의 제한하거나 또는 폐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한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한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한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3부			제 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보는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 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보는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대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제 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나은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보는 사람이 향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보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입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입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에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한 것.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

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한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부상의부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위하여, 특히 부상교육의 진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위하여, 특히 부상교육의 진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한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광한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부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보는 사람에 대한 부상의무교육 원칙을 전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한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보는 사람의 다음 권리들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한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한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보는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한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 4부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2.(a) 보는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신의한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b)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

문기구의 창설 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 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죽하다.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현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장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리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리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리,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리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리(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종합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련하는 전문기

	구가 각기 그 권리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진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보는 지역에 적용된다.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리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작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신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현장 및 전문기구현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나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부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 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과을 통보한다.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기입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6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분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⁹⁾

서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현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 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된을 고려하고, 이 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킨 국제연합 현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부

- 제 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기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부 및 국제법상의 의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현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의 존중하여야 한다.

9) 1966년 12월 16일 총회 결의안 2200 A (XXI)에 의하여 채택.

제 2부

- 제 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한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나아울 조치를 취한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한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한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기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한 것을 확보한 것.
- 제 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 것을 약속한다.
- 제 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궁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부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부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

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 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한 권리자를 가사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의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부

- 제 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기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관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칭구한 권리자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보는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 세 미만의 자가 번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입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시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군용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 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보는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관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부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역부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기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부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간접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부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부

- 제 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거나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자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은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

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보는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한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자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보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의 이의를 이유로 구금되거나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보는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이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의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나름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관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상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되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한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가에

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사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생생을 축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선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단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위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접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실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行使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나중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중요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1.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기입하는 권리와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의 행사를 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시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한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시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

거나 피선택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규제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부

-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일부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시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한 것이라는 전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시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시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되,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시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5조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의를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의위원의 잔여인기 동안 재직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자리적 안내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를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한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식을 선언한다.		제38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식위원의 잔여인기가 결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		제39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게 양심적으로 수행한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40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신의한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관한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 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는가, 현재 취하고 있는가 또는 취한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관계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한 권리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신사한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

진다.

(e) "(c)"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신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ки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보는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

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구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신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의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현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현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부

제4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현장 및 전문기구 현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보는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보는 회원국, 전문기구의 보는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보는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보는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빙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제 5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50조**
-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제안을 신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시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시국에게 송부한다. 당시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시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회의를 소집한다.
- 동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시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나라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시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시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52조**
-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과 통보한다.
-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¹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조**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한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시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 제 2조**
- 제1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나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 3조**
-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이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10) 1966년 12월 16일 총회 결의안 2200 A (XXI)에 의하여 채택

<p>없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 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p>제 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개인이 보는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한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회의 결론을 송부한다. <p>제 6조</p> <p>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p> <p>제 7조</p> <p>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현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p> <p>제 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p>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p> <p>제 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약의 효력을 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p>제10조</p> <p>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p> <p>제1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신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p>제1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p>제1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과을 통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

(c) 제12조에 따른 폐기

-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이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¹¹⁾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운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한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한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 1989년 12월 15일 총회 결의안 44/128에 의하여 채택.

- 제 2조 1. 전쟁 중 벌행된 군사적 성격의 그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되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 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 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신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 제 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련권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신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 제 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은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 제 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 제 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 제 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 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 제 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유엔 인권 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목록

- No. 1 인권기구 (Human Rights Machinery)
- No. 2 유엔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3 인권분야의 자문 및 기술적 협력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4 고문방지 (Combating Torture) (1차개정판)
- No. 5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철폐 투쟁에 대한 제2차 10개년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 No. 6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차개정판)
- No. 7 청원 절차 (Complaint Procedures)
- No. 8 인권을 위한 세계 공보 캠페인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
- No. 9 원주민의 권리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차개정판)
- No. 10 아동의 권리 (The Rights of the Child) (1차개정판)
- No. 11 초법적, 약식 및 독단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1차개정판)
- No.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No. 13 인도주의법과 인권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No. 14 동시대적 형태의 노예제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No.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규약위원회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 No. 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차개정판)
- No. 17 고문방지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No. 18 소수민의 권리 (Minority Rights) (1차개정판)
- No. 19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o. 20 인권과 난민 (Human Rights and Refugees)
- No. 21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 No. 22 여성 차별: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및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 No. 23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 No. 24 이주노동자의 권리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 No. 25 인권과 강제퇴거 (Forced Evictions and Human Rights)
- No. 26 독단적 구금관련 실무그룹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No. 27 유엔 특별보고관 17가지 인권 관련 FAQ (Sevente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 No. 28 자결권 관련 용병활동의 영향 (The Impact of Mercenary Activities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 No. 29 인권활동가: 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제네바에 주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작하였다. 동 책자는 활발하게 고려되고 있거나 특별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별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권이 어떠한 것이고, 유엔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국제적 제도 (international machinery)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내용 변경이 없고, 제네바 주재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재발행 기관이 협의하고 크레딧(credit)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유엔 공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재발행이 가능하다.

문의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뉴욕사무소(New Your Offic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인쇄일| 2004년 12월 23일
|발행일| 2004년 12월 23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02 2125 9660~5
|FAX| 02 2125 9666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代)

ISBN: 89-90475-52-X 94300 비매품
89-90475-51-1 (세트)

